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담당 본부 신설〉
■ 황정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52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건 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2
1.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담당 본부 신설(안 제6조제4항)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황정아의원 등 22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12.

다. 회부연월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Ⅲ. 검토의견

1.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 담당 본부 신설(안 제6조 제4항)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에 있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와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로 분리하여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는 대전에 두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 ③ (생략) ④ 우주항공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둔다. <후단 신설>	제6조(우주항공청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와----- ----- ----- ----- ----- -----이 경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의 소재지는 대전광역시로 한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대전에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담당 본부를 두려는 것으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우주항공청 소관 출연연구기관이 소재해 있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에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로 지정되는 등 연구개발 관련 인력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연구개발 기능 수행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대전에 연구개발 담당 본부를 두려는 입법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입법취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우주항공청 및 행정안전부의 신중검토 필요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립 취지 중 하나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우주항공 분야의 연구개발 및 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본부와 산업을 육성하는 본부를 별도로 두는 것이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어 신중검토 필요 입장임.
- 또한, 우주항공청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 ‘연구개발 관련 사업’

과 ‘산업의 육성·진흥 사업’을 명확히 분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더불어 소속기관, 지방청, 지역사업소는 본부와 소재지가 다를 수 있으나 본부 조직 중 일부 기능 소재지를 달리한 사례는 찾기 어려우며, 사무공간 부족으로 인근 건물에 일부 조직을 배치한 경우만 예외라고 설명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우주항공청 본부에서 연구개발과 연계된 산업 육성·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등 기능 연계성을 고려 시 사업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아 현행 유지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227